

# 「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3.11.11(월) 장문혁의원외 2인

나. 회부일자 : 2013.11. 12(화)

다. 상정일자 : 2013.11. 12(화) 제1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 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장문혁의원)

-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연계한 평창군 관광사업의 진흥을 활성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 관광사업 개발사업자를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올림픽 관광유산을 공고히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기위함.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홍금숙)

- 본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연계한 관광사업의 진흥을 활성화함은 물론 관광객 1,000만 시대를 맞이하는 관광 군으로서 우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.

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의하면 “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”는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**

**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**【붙임】**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안 1부

##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관광사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관광사업"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·숙박·음식·운동·오락·휴양·용역을 제공 또는 기념품을 제조·판매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보조금 지급대상 및 용도)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은 관광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.

② 평창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우수 관광콘텐츠 육성사업
2. 지역자원을 활용한 우수 체험숙박시설 조성·육성사업
3. 우수 관광자원 개발사업
4. 우수 관광기념품 육성사업
5. 국내외 관광객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
6.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4조(보조금의 신청 등) 보조금의 신청·지급·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